서울특별시 대학생 아침밥 지원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982

2023. 12. 19.
기획경제위원회

Ⅰ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년 06월 07일, 박성연 의원 외 11명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08월 21일

다. 상정결과 : 【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】

-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(2023.12.19.)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수정안가결)

Ⅱ. 제안설명의 요지(박성연 의원)

1. 제안이유

○ 최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‘천원의 아침밥’ 사업이 호평을 받고 있으므로, 우리 쌀 이용을 촉진하는 한편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의 대학생의 아침밥 먹는 문화 조성과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지원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아침밥 지원이

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에서 쓰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(안 제2조).

나. 우리 쌀 이용을 촉진하고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위하여 아침밥을 지원하고 아침밥 먹는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.

다. 아침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.

라. 아침밥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.

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이준석)

가. 조례안의 개요

○ 동 조례안은 대학생의 아침밥 지원계획의 수립. 재정지원, 교육 및 홍보 등을 규정함으로써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생 건강 증진 및 우리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됨.

나. 대학생 아침밥 지원사업의 추진 경위 및 현황

○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‘국민건강영양조사’에 따르면 19세부터 29세 절반 이상이 아침 식사를 거르고 있으며, 전체 연령 중 결식률 1위를 차지할 정도로 20대의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.

〈 최근 5년간 아침 식사 결식률 추이〉

(단위: %)

연령(세)	2017	2018	2019	2020	2021
1~9	8.7	10.0	9.6	12.5	11.2
10~18	31.1	33.3	33.9	41.6	32.4
19~29	**52.0**	**50.1**	**54.0**	**58.2**	**53.0**
30~39	37.1	38.2	43.8	45.1	43.2
40~49	26.7	29.0	32.6	34.1	35.6
50~59	14.7	19.0	21.1	24.9	20.3
60~69	9.3	9.8	7.9	13.5	10.7
70+	4.1	4.5	5.4	4.7	5.6
평균	22.96				

※ 자료출처: 질병관리청, 2021 국민건강통계

○ 한편, 통계청의 2022년 양곡소비량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은 64.7kg으로 1992년 소비량(124.8kg)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.

〈 연도별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 〉

(단위: kg, %)

연 도	2013	2014	2015	2016	2017	2018	2019	2020	2021	2022
소 비 량	75.3	73.8	71.7	71.2	70.9	69.5	67.4	66.3	65.0	64.7

연 도		2013	2014	2015	2016	2017	2018	2019	2020	2021	2022
	차 이	-1.8	-1.5	-2.1	-0.5	-0.3	-1.4	-2.1	-1.1	-1.3	-0.3
	증감률	-2.3	-2.0	-2.8	-0.7	-0.4	-2.0	-3.0	-1.6	-2.0	-0.5

※ 자료출처: 통계청 2022년 양곡소비량 조사

○ 이에 정부는 아침 식사 결식률을 낮추고, 국내산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지자체, 대학과 공동부담으로 학생들에게 아침식사를 1천원에 제공하는 ‘천원의 아침밥’ 사업을 진행 중인 상황임.

○ 참고로 서울시는 2023년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한 서울소재 대학(27개교) 약 25.3만명(일 식수인원 4,300명 이내)에게 1식 비용기준으로 2억 5천 3백만원을 투입함.

○ 따라서 동 조례안은 정부정책 기조에 맞춰 서울시에 소재한 대학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침밥 먹는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아침 식사 결식률을 낮추고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겠음.

다. 조례안의 세부 내용

(1) 목적(안 제1조)

○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으로 우리 쌀 이용 촉진과 서울시 소재 대학 대학생의 아침밥 먹는 문화 조성 및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지원함

으로써 미래 세대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음.

○ 서울시 소재 대학 대학생의 아침밥 먹는 문화 조성과 쌀 이용 촉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명확히 제시함.

(2)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
○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‘아침밥’에 대한 용어를 대학교(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)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급식시설에서 국내산 쌀을 이용하여 조리하거나 제조한 음식을 대학생 대상으로 아침에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.

○ 조례안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를 명확하게 설명함으로써 조례를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있어 의문점과 논란을 없앨 수 있음.

○ 다만, 아침밥에 대한 정의 중 대학교에 대한 정의가 다른 용어 정의와 혼재되어 규정되고 있으므로 조례의 체계성 확보를 위해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.

< 수정의견 >

조례안	수정의견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아침밥”이란 대학교(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직접 또는 위탁	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대학교”란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

조례안	수정의견
하여 운영하는 급식시설(기숙사에서 그 입사생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은 제외한다)에서 국내산 쌀을 이용하여 조리하거나 제조한 음식을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침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	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 2. “아침밥”이란 대학교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급식시설(기숙사에서 그 입사생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은 제외한다)에서 국내산 쌀을 이용하여 조리하거나 제조한 음식을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침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

(2) 시장의 책무(안 제3조)

○ 안 제3조는 우리 쌀 이용 촉진과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위하여 아침밥을 지원하고 아침밥 먹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음.

○ 이는 아침밥 먹는 문화 확산에 대한 시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우리 쌀 이용 촉진과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위한 입법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임.

○ 다만 문화는 확산의 대상이지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어법에 맞게 수정이 필요함.

< 수정의견 >

조례안	수정의견
제3조(시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장(이하 ”시장“이라 한다)은 우리 쌀 이용을 촉진하고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위하여 아침밥을 지원하고 아침밥 먹는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제3조(시장의 책무)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확산될 ----------

(4) 지원계획의 수립(안 제4조)

○ 안 제4조는 시장에게 우리 쌀 이용 촉진과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위하여 아침밥의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 있음.

- 지원계획에는 ▸ 지원 추진 방향, ▸ 지원 대상 및 목표, ▸ 대학교 등 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, ▸ 아침밥 먹는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음.

○ 이와 같이 아침밥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함으로써 체계적인 아침밥 지원 정책 수립과 함께 해당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.

(5) 실태조사 및 재정지원(안 제5조·안 제6조)

○ 안 제5조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▸ 대학생의 영양 상태, ▸ 아침밥

먹는 문화 환경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,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.

○ 이와 같은 실태조사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정확한 현황 파악 등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고, 대학생 영양 상태 등의 변화에 체계적·전략적으로 대처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임.

○ 안 제6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아침밥을 제공하는 대학교에 ▸ 아침밥 먹는 학생의 숫자에 따른 식대, ▸ 아침밥 제공을 위한 인건비, 홍보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고, 아침밥 지원 범위·방법, 대상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○ 이는 대학생의 아침밥 지원을 위해 재정이 열악한 대학교의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예산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식대와 홍보비를 지원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○ 다만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, 제6조제1항제2호의 인건비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.

< 수정의견 >

조례안	수정의견
제6조(재정지원) ① 시장은 대학교가 학생을 대상으로 아침밥을 제공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1. 아침밥 먹는 학생의 숫자에 따른 식대 2. 아침밥 제공을 위한 인건비, 홍보비 ② (생 략)	제6조(재정지원) ① ---------- ---------- 식대와 홍보비 등 필요한 ----------. 1. (삭 제) 2. (삭 제) ② (조례안과 같음)

(6) 교육 및 홍보 및 협력체계(안 제7조・안 제8조)

○ 안 제7조는 아침밥 먹는 문화 조성과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

안 제8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아침밥 먹는 문화 조성과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 지원을 위해 ▸ 대학교, ▸ 유관기관 및 단체, ▸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.

○ 20대의 높은 결식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침밥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 확산이 요구되므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, 협력체계 구축은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음.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Ⅴ. 수정안요지

가. 수정이유

○ 아침밥에 대한 정의 중 대학교에 대한 정의가 다른 용어와 혼재되어 있어 이를 별도로 규정하고,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으로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인건비 지원 항목은 삭제함.

나. 수정안의 주요 내용

○ 대학교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규정함(안 제2조제2호).

○ 안 제3조 본문 중 ‘확산할’을 ‘확산될’로 수정함(안 제3조).

○ 재정지원 항목 중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으로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인건비 지원 항목은 삭제함(안 제6조).

Ⅵ. 심사결과 : 수정안가결

(재적위원 12명, 재석위원 8명, 전원찬성)

Ⅶ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대학생 아침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982

제안년월일 : 2023년 12월 19일
제 안 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○ 아침밥에 대한 정의 중 대학교에 대한 정의가 다른 용어와 혼재되어 있어 이를 별도로 규정하고,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으로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인건비 지원 항목은 삭제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○ 대학교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규정함(안 제2조제2호).

○ 안 제3조 본문 중 ‘확산할’을 ‘확산될’로 수정함(안 제3조).

○ 재정지원 항목 중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으로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인건비 지원 항목은 삭제함(안 제6조).

서울특별시 대학생 아침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대학생 아침밥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대학교”란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2. “아침밥”이란 대학교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급식시설(기숙사에서 그 입사생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은 제외한다)에서 국내산 쌀을 이용하여 조리하거나 제조한 음식을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침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

안 제3조 중 “확산할”을 “확산될”로 한다.

안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 호의”를 “식대와 홍보비 등 필요한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조례안	수정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아침밥”이란 대학교(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급식시설(기숙사에서 그 입사생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은 제외한다)에서 국내산 쌀을 이용하여 조리하거나 제조한 음식을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침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대학교”란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 2. “아침밥”이란 대학교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급식시설(기숙사에서 그 입사생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은 제외한다)에서 국내산 쌀을 이용하여 조리하거나 제조한 음식을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침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
제3조(시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장(이하 ”시장“이라 한다)은 우리 쌀 이용을 촉진하고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위하여 아침밥을 지원하고 아침밥 먹는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제3조(시장의 책무) ----------확산될 ----------
제6조(재정지원) ① 시장은 대학교가 학생을 대상으로 아침밥을 제공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1. 아침밥 먹는 학생의 숫자에 따른 식대 2. 아침밥 제공을 위한 인건비, 홍보비 ② (생 략)	제6조(재정지원) ① ---------- 식대와 홍보비 등 필요한 ----------. 1. (삭 제) 2. (삭 제) ② (조례안과 같음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대학생 아침밥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우리 쌀 이용을 촉진하는 한편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의 대학생의 아침밥 먹는 문화 조성과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지원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대학교”란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2. “아침밥”이란 대학교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급식시설(기숙사에서 그 입사생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은 제외한다)에서 국내산 쌀을 이용하여 조리하거나 제조한 음식을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침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장(이하 ”시장“이라 한다)은 우리 쌀 이용을 촉진하고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위하여 아침밥을 지원하고 아침밥 먹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) 시장은 우리 쌀 이용을 촉진하고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위하여 아침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

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침밥 지원계획(이하 ”지원계획“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아침밥 지원 추진 방향
2. 아침밥 지원 대상 및 목표
3. 아침밥 지원을 위한 대학교 등 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
4. 아침밥 먹는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
5. 그 밖에 아침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5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아침밥 지원을 위하여 대학생의 영양 상태, 아침밥 먹는 문화 환경 등에 대하여 그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6조(재정지원) ① 시장은 대학교가 학생을 대상으로 아침밥을 제공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식대와 홍보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아침밥 지원의 범위와 방법, 대상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7조(교육 및 홍보) 시장은 아침밥 먹는 문화 조성과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8조(협력체계) 시장은 아침밥 먹는 문화 조성과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교, 유관기관 및 단체,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